

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5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08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일본식 한자어 정비, 법령 근거 없는 규제,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일본식 한자어 정비(안 제1조 ~ 안 제5조)
나. 조직개편사항 반영(안 제6조 ~ 안 제9조)
다. 위법한 과태료 등 의무 부과 규정 정비(안 제10조 ~ 제12조)
1) 안 제10조, 안 제11조: 상위법령 과태료 등 위임규정 없음
2) 안 제12조: 질서행위규제법 절차 적용 대상임
라.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등 정비(안 제13조 ~ 안 제16조)
1) 안 제13조: 장애인 등급제 개편사항 반영, 법령명 띄어쓰기
2) 안 제14조: 자동차세 연납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
2) 안 제15조: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정의규정 삭제
3) 안 제16조: 「민법」 개정에 따라 용어 개정
4) 안 제17조: 상위법령 변경사항 및 기관명칭 등 반영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나. 합 의

1) 기획감사담당관: 규제심사

2) 복지지원과: 성별영향분석 평가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19 - 1221호

가) 예고기간: 2019. 9. 10. ~ 2019. 9. 30.(20일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불입

5. 본문: 불입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,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,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재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, 조직개편 사항 반영, 위법한 과태료 등 의무 부과 규정 정비,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 등 정비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